서울특별시건강도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시행 2010. 9.27] [조례 제5019호, 2010. 9.27, 타법개정]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건강증진담당관)02 - 731 - 61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건강도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서울특별시건강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정책의 추진에 대한 부서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정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지지 확보 및 부문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도시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복지건강본부장ㆍ맑은환경본부장ㆍ도시교통본부장ㆍ도시계획국장ㆍ홍보기획관 및 소방재난본부장 (개정 2007.12.26, 2008.4.3, 2010.09.27)

2.건강도시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

③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 (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복지건강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12.26, 2008.4.3, 2010.09.27)

제5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분과위원회 등) ①위원회는 업무추진의 효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③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협조요청) ①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때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5019호,2010. 9.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서울특별시건강도시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 여성가족정책관 " 을 " 복지건강본부장 " 으로 하고, 제4조제3항 중 " 여성가족정책관 " 을 " 복지건강본부장 " 으로 한다.

~ 생략